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제안연월일: 2025. 3. . 의 안 9137 번 호

제 안 자 : 문화체육관광위원장

1. 대안의 제안경위

건 명	의안 번호	대표 발의자	발의일자	회의정보	
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	2203950	문대림의원 등 10인	'24.9.12.	상정	제418회 국회(정기회) 제1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('24.11.19.)
				소위	제420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('25.1.15.)
				심사	제422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('25.2.27.)
	2205912	최보윤의원 등 10인	'24.11.27.	상정	제420회 국회(임시회)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('25.1.10.)
				소위	제420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('25.1.15.)
				심사	제422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('25.2.27.)

제423회국회(임시회)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(2025. 3. 5.)는 위 2 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.

2.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장애인 등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정책을 적극적·체계적으로 추진하기

위하여 관광진흥계획에 '관광취약계층 등을 위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'을 포함하도록 함(안 제3조제2항제3호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관광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의2. 관광취약계층 등을 위한 「관광진흥법」 제2조제13호에 따른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관광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)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관 광진흥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3조(관광진흥계획의 수립) ①	제3조(관광진흥계획의 수립) ①		
(생 략)	(현행과 같음)		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	②		
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		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		
<u> <신 설></u>	3의2. 관광취약계층 등을 위한		
	「관광진흥법」 제2조제13호		
	에 따른 무장애 관광 환경 조		
	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		
4. ~ 9. (생 략)	4. ~ 9. (현행과 같음)		
③・④ (생 략)	③・④ (현행과 같음)		